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41호)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75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3

I. 제안경위

1. 김기현의원안(의안번호 제2217741호)

가. 발 의 자 : 김기현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6. 3. 25.

다. 회 부 일 : 2026. 3. 26.

2. 구자근의원안(의안번호 제2218075호)

가.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3.

다. 회 부 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기현의원안(의안번호 제221774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구자근의원안(의안번호 제2218075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 신설

현행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u>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u> (이하 생략)	

또한,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¹⁾.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

따라서 개별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이에 개정안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²⁾의 의결을 전제로, 국가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참고로,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³⁾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⁴⁾,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의 내용을

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각각 의안번호 제2217740호, 제2218076호

3) 현재 의용소방대는 각급 지자체에 상응하여 3,902대 총 96,561명으로 조직되어 소방서 건물(공유재산)에 입주 중임

4)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유재산특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⁵⁾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방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⁶⁾,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5)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6)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특례의 대상과 목적을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김기현의원안)과 2035년 12월 31일(구자근의원안)로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⁷⁾을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현재 공유재산에 입주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를 허용하는 경우 국가재정 부담 과중이 우려되며, 소방사무 및 의용소방대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필요 시 현재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이 가능하므로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8)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35호 (사용료등의 감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함)

현행	김기현·구자근의원안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②(생략) ③ <u>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②(생략) 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u>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김기현의원안		
별표 <u><신 설></u>	별표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현행	구자근의원안		
별표 <u><신 설></u>	별표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사용료등의 감면 2035. 12. 31.

문 의 처
02)6788-5160